

고시



기안용지

고시제 2/호

분류기호 문서번호	노리130	9350 (전화번호 420 0)	신질규정 12 소 22 항 구강
처리기간		결재자	신영구 강
시행일자			시 강
보존년월			
보조기관	농림부 장관 서울특별시	협조	범우회장 (고시안결재) 법제국장 시민회장 임정국장
기안책임자	박동환	가. 나. 다.	

경유신장: 가안참조. 발송: 통제: 71.4.12

제목: 서울특별시 지정보호수 해제
제안: 내부결재
제목: 동건

1. 종로구 사직로상에 위치한 지정보호수 4호목을 다음 사유로 지정해제코자 합니다.

- 가. 고수로 재생이 불가능함
- 나. 교통상의 장애를 이루고 있음 (로상위치)

2. 지정보호수 해제 목록

지정번호	소재지	수종	수령	수고	흉고직경	해제사유
4	종로구 사직로상	느리나무	40년	18m	20cm	고사 및 교통상

3. 제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조치.

1971. 10. 9

제3안 ~~해제~~ 서울특별시 제 3 호 1971. 10. 9 제 23 호
~~제 목 동 건~~ 서울특별시 지정 보호수 해제 ~~제 목 동 건~~
 조 서울특별시 지정 보호수 중 보존관리의 가치가 있는 다음 보호수
 를 해제함을 고시 합니다.

해제 목록

지정번호	소재지	수종	수경	수고	종교지경	해제사유
4	종로구사립청장	느리나무	400년	10m	120cm	고사 및 교통상 장애

1971. 10. 9
서울특별시 강

제3안 시행안
 수신 종로구청장
 참조 산업과장
 제 목 동 건

1. 산업 410~170 (기. 2.6) 외 권역된
 2. 서울특별시 지정 보호수 제 4호 목을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해제하리 구청장 책임하에 원천 제거 조치할 것 이며
 3. 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조치 시달 할 것 이니 양지할 것
- 첨부. 1. 해제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제4안 시행안
 수신 공보실장
 제 목 동 건

1. 별첨과 같이 당시 지정 보호수를 해제 하였던 시보에 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첨부.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사본 1부. 끝

제5안
 수신 산림청장
 참조 임점과장

제목 등 인

1. 입점 130 ~ 2434 (67. 12. 30) 호와 관련됩니다.

2. 별첨 과시문 사본과 같이 당시 지점보조수를 해제하였기 보
고 합니다.

첨부. 1. 서울특별시 과시 제 호 사본이부름.